

2004년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

-산업재해 취약부문-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4년도 업무추진 사항중 산업재해 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 목 표 〉

- ◆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03년 대비 10% 산업재해 감소 달성
 - ▶ 재해율 : 0.88% → 0.78%
 - ▶ 재해자수 : 94,000명 → 85,000명
 - ▶ 사망자수 : 2,800명 → 2,600명
- ※ 2003년도 재해율·재해자수·사망자수는 추정치임



〈 추진 전략 〉

- ① 재해다발 취약분야 산재감소에 정책비중 강화
 - ▲ 재해발생 사업장 행·사법조치 강화
 - ▲ 소규모 사업장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확대
- ② 대기업 등 안전관리 능력(의지) 보유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③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강화
 - ※ 『제2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산재 예방활동기반 마련

1. 영세소규모업체의 재해예방관리능력 제고

1. 재해다발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가. 사업목표 : 7,500개소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1,000개소	6,500개소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 및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Clean사업과 연계 추진

나. 대상

- ① 규모별 동종업종별 평균재해율이 상 사업장
- ②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장

안전보건개선명령의 일괄선정 제외 대상

- ① 사업장 감독을 우선 실시해야 할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및 전년도 개선계획 명령사업장(감독 실시 후 필요하면 안전보건 개선명령)
- ② 100인이상 조선업체(조선업 등급관리 25개소)
- ③ 7개 위험업종 대상 FSM관리사업장(178개소)(안전보건개선명령 대상사업장을 종전 5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확대 적용)

다. 선정방법 및 시기

- ① 선정방법 : 높은 재해율순으로 순차적으로 안배하여 우선 선정(지방관서)
- ② 시기 : 행정력을 감안, 3회에 나누어 명령(1월, 4월, 7월)

시기별	계	1차(1월)	2차(4월)	3차(7월)
선정기준월	★	2003. 11월말	2003. 12월말	2003. 12월말
선정사업장수 (50인이상)	7,500개소 (1,000개소)	2,500개소 (300개소)	2,500개소 (400개소)	2,500개소 (300개소)

※ 1차선정 사업장(2003. 11월말 재해기준)은 상대적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

라. 추진방법 및 세부추진일정

기 시달한 2004년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세부시행 지침 참조(산안68320-465호, 2003. 12. 11)

마. 행정사항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익월 10일까지 본부에 보고

2.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가. 『CLEAN3D』사업의 지속 추진 (공단)

(1) 「CLEAN사업장」 조성 지원 (5,000개소)

- ① 지원대상을 CLEAN3D 사업목적에 맞게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종에 대해 우선 지원
- ② 유해·위험도에 따라 지원한도액 및 대상품목을 확대

- 지원항목은 산안법평상 준수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로 확대 (57종 → 75종)
 - 도금·주물업 등 유해·위험정도가 높고, 개선사항이 많은 업종은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 기타 사업에 대한 안내·홍보 등은 공단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2)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38,000개소)

- ① 종전 공단과 민간대행기관이 분담하여 실시하던 기술지도를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단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근골격계 기술지도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

- ② 안전관리기술지원 (19,000개소)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술지도 횟수를 확대하고 (년2회 → 년4회)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 (재해발생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장으로 우선 선정)

- ③ 보건관리기술지원 (19,000개소)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 (년3회 → 년3-4회)

(3) 건강도우미 사업 (10,000개소)

건강도우미 사업은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비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령자, 비정규직 등 건강관리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하고,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 (지원횟수년 3회)

나. 공장설립 단계별 안전보건 기술지원 (공단)

(1) 소규모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공장설립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 ① 3월 이내 : 안전교육 실시 등 지원안내
- ② 6월 이내 : 현장방문 기술지원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설개선 자금지원 (Clean 3D 사업 연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재해자 중 12.2% (2,971명)가 신규 설립 사업장에서 발생

- ③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2년간 기술지원 전담자 지정 등 관리

3.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 (본부, 공단)

가. 목적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관리·지원토록 유도하기 위한 협력업체 지원 모델 개발·보급

나. 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모델 (프로그램) 개발·보급

(1)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지원 중인 기업을 시범업체로 선정 (5개사) 하고, 시범업체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실태와 문제점 파악 및 지원 모델 (안) 마련 (8월)

모델(안)에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개선에 필요한 작업공정 위험성 평가, 자료제공 등의 세부지원내용 등 구체적 시행방안 포함

- (2) 시범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평가 후 모델(안)을 보완하여 확정·보급 (4-6월)

다. 협력업체 지원 협약제도의 도입 (7월 이후)

지원 모델을 토대로 기업과 공단간 협력업체 지원 협약 체결·시행

- ①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지원모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
- ② 공단은 협약체결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실시 및 협력업체 지원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II. 대형사고 위험 사업장 중점관리

1. 중대산업사고 예방관리

가. FSM 사업장 차등관리 확행

- ① 대상 : FSM 대상 사업장 중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완료 후 FSM 이행수준평가를 받아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
- ② 등급별 차등관리
- ① P등급 : FSM 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실시

정부 포상업체 선정시(화학분야) P등급 업체 우선추천

- ② S 등급 : 연 1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FSM 이행실태 점검
- ③ M 등급 : 연 2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FSM 이행실태 점검,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적사항 개선방법 지도, 반기별 FSM 관계자 교육

-FSM 대상 사업장 중 차등관리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장 및 FSM 비대상업체 중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실시후 보고
-반기별로 FSM 대상 및 비대상 사업장 점검결과 보고

③ M 등급 수시선정 등 사후관리

- ① FSM 관리대상 시설에서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 작업중지·사용중지·안전진단·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은 M등급으로 수시선정 관리

P등급을 4년 이상 유지한 사업장에서 M등급 수시선정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등급조정 유예

- ② 등급상승 노력없이 최근 3년간 S등급 및 M등급

에 머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구속수사요청

필요시 안전진단 명령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수립명령대상으로 수시선정 및 관리

- ④ 행정사항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 및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나. FSM 사업장이행수준 평가

- ① 대상
- ① 정기평가 : 2001년도에 이행수준평가를 받아 차등관리 등급이 부여된 P 및 S 등급 사업장
- ② 신규평가 : 2004년도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사업장
- ③ 재평가 : 차등관리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 중 등급 재평가를 요청한 사업장

FSM 이행수준 평가 대상 사업장 명단 수시 보고

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심사 강화

-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 ① 현행 적용대상 물질 21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② 1일 사용기준량 하향조정·강화
- ②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강화
- ③ 공정안전보고서 최초 심사 후 매 5년마다 재심사 제도 복원

라. 종합위험관리체계(IRMS) 활용 활성화

- ① IRMS 성능개선 지속추진
- ① 신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사업장에 대한 관련정보 DB 추가 입력
- ② 기존 사업장의 설비 변경 사항 등 최신자료 Update
- ③ IRMS의 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㉒ 사업장 RMS 구축지원 강화 및 전문가 양성

- 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FSM 사업장에 대해 RMS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하고, 위험설비 DBCS 구축시 기술지원
- ② 사업장 RMS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약 1,200명)
- ③ FSM 사업장 피해예측 강화
- ① 단위 플랜트별로 3가지 이상의 사고시나리오를 작성, 기술지도
- ② 종합위험관리시스템(RMS) 등 피해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피해범위 예측, 피해 최소화 조치
- ③ 사고시나리오별로 사업장 내부 비상대응절차 마련, 평시 훈련 실시 유도
- ④ 사업장 RMS 활용 실태 조사, 활성화 방안 마련

마. FSM 12대 실천과제 선정 · 보급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안전관리 요소 중 12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 보급하여 캠페인 전개

- ① FSM 사업장별로 실천방안 수립, 내실있게 추진 유도
- ② 각종 기술자료, 포스터 ·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③ FSM 이행 실태 점검시 12대 중점과제 집중점검

〈공정안전관리(FSM) 12대 실천 과제〉

- ① 각종 도면 등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 ② 공정 · 설비의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 ③ 생산설비의 위험등급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

- ④ 안전작업 허가 절차 준수
- ⑤ 하도급업체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
- ⑥ 공정설비, 원 · 부재료 변경시 변경관리 절차 준수
- ⑦ 공정 및 설비의 운전 전(前) 안전점검
- ⑧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FSM 교육
- ⑨ 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
- ⑩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행
- ⑪ 안전운전절차 준수
- ⑫ 비상조치계획의 주기적인 훈련

바. 사고예방기술자료 개발 · 보급

- ① 화학설비의 성능유지 절차 중 가열로 등 취약시설 진단 기술자료 개발, 사고사례 속보 작성 · 배포
 - ② 사고경험의 공유를 위한 워크샵 개최
- 각종 사고사례, 가열로 대류부(Convection Section) Tube에서의 부식발생 경로(Corrosion Mechanism) 검사기술 등

III. 중대재해 취약 위험작업 산재예방관리 강화

1. 조선업 재해 예방활동 촉진

가. 조선업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

- ① 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선박건조업체
- ② 시기 : 2004.3~6월중
- ③ 방법 및 조사내용
- ① 2003년도 산재발생 현황 조사

-본부에서 2003년도 산재보험전산망 조회를 통해 업체별 산재 발생 현황 작성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송부
-관할 지방관서에서 산재보험전산망 재조회, 산업재해 조사표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연도 재해발생 현황 확인
-업체별 조사대상연도 재해발생 현황을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 확정하고 본부에 보고

②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수행 실태 평가

“조선업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세부지침 별도 시달

④ 결과조치

- ① 지방관서별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 ② 평가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업체를 청색(자율관리), 황색(예방점검), 적색(감독) 3개 등급으로 구분, 차등관리

나. 조선업 산재 취약요인 일제점검

- ① 대상 : 선박건조업체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장

- 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등급 분류결과 황색·적색사업장
- ②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써 2003년도중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
- ③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중 2003년도중 재해자가 2명 이상발생한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산정

- ② 시기 : 7월중
- ③ 추진방법
- ① 지방관서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세부점검 계획수립·시행
- ② 청색 사업장은 점검표를 사업장에 송부하여 노·사 자율로 점검토록 조치하고 점검결과 시정여부확인
- ③ 황색사업장 등은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적색사업장은 감독 실시

점검실적은 익월 10일까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보고

다.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 (1) 대상 :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조선업체 현장 관리 감독자
- ② 시기 : 4~5월중
- ③ 추진방법
- ① 관할 지방관서별로 사업장의 협조를 받아 교육 대상확정
- ② 공단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강사, 교육일정 등 세부교육 계획수립·시행

교육받은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전달교육 실시토록 조치

라. 조선업 협력업체 사업주 교육

- (1) 대상 : 10개 조선사 하청업체 사업주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SXX조선(주), (주)한진중공업, (주)신아, 대선조선(주), (주)강남

- ② 시기 : 4~5월중
- ③ 추진방법
- ① 중대재해 사례 및 재해예방대책 등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내용 선정
- ② 관할지방관서별로 모기업을 통해 협력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대상자 확정, 교육참가 공문발송, 교육 실시 등

마.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 (1) 대상 : 10개 조선사 하청업체 근로자
- ② 추진방법
- ① 공단에서 용접, 도장, 연마, 고소작업 등 분야별 교육 실시 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 이수자 명단을 해당 모기업에 통보
- ② 모기업 안전부서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해당 분야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작업을 금지토록 지도

바.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 운영

- (1) 목적 : 산업안전의 노·사 참여를 통해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향상 유도
- ② 시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③ 방법 :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위원장 : 부산청장, 2003. 10. 8 구성)』를 활용하여 안전보건 증진 방안 등 논의

전국 7대 조선업체의 노사 및 노동부 공단, 학계 관계자로 구성 (총 23명)

2. 철도산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조사

- (1) 대상 : 철도청,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철도산업 6개사(상반기)

- ② 점검반은 본부주관의 관계전문가로 구성
- ③ 철도산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2003.8월 신설된 철도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 ④ 점검결과는 즉시 개선가능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3.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 및 예방활동 강화

가.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조사 철저

- ① 대상 : 2004년도중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협력업체 재해 포함) 발생 사업장
- ② 재해조사시 산안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

① 사망재해 발생 이전 최근 1년간 발생한 동종의 일 반재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 범위반사실에 대한 병합처리

② 감독관 집무규정 및 “산안법위반 범죄수사요령 (2001. 5)”에 의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범위반 사실의 입건 누락 방지

③ 개정 시행령 과태료 등 관련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누락 여부 철저 확인 등 과태료 부과 확행

나.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단계적 조치 강화

① 대상 : 연도중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 해(협력업체 재해 포함) 발생 사업장 중 해당사업장

② 대상별 감독방법

① 1건 발생시 안전 또는 보건진단명령을 통한 안전 관리 개선 유도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써 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폭발·붕괴 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진단명령

- ② 2건 발생시 지방관서 주관 안전보건감독 실시
- ③ 3건(10,000인 이상 4건) 이상 발생시 지방청 주관 안전보건감독 실시,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안

전 또는 보건관리자 증원 명령

2건 이상 발생 사업장은 발생시마다 감독 실시

다. 『사망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사법처리 확행

① 대상 : 연도중 3건(건설업 2건) 이상 발생 또는 동시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의 범위반자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

② 조치방법 : 재해원인을 포함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 실시 결과를 추가하여 양형수준 상향 조정 요구

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에 의한 구속수사 요청 확행

라.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 제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 위반으로 동시에 3인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

초진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간주

② 행정사항

검찰송치와 함께 사고발생개요 및 조치사항, 사건 송치서류 등 관련서류를 본부에 제출

마. 중대재해 발생업체 행정제재 기준 강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대상 중대재해 기준 강화(현행 사망재해지수 동시 3명 이상 → 2명 이상) -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

산안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바.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① 대상 :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② 대상별 교육시기(연간 2회 이상)

① 2003년도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 상반기 1회이상

② 2004년도 상반기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 하반기 1회이상

교육불참사업장은 점검대상사업장에 우선 선정

③ 교육방법 : 업종별 교육계획 수립 · 시행
공단에서는 업종별 교육강사 지원 및 사업장 안전관리기술기법 보급 등

사. 『사망재해』 취약 유형별 예방활동 강화

(1) 대상

① 사망재해 취약유형(협착 · 전도 · 감전 · 충돌) 사업장

협착(로울러, 혼합기), 전도(곤도라, 리프트 등), 감전(활선작업, 이동식 전동기계 · 기구), 충돌(건설 ·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발하는 기인물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망재해 취약업종

2004.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지방관서별 사망자수 급증 업종 선정

② 취약유형별 업종별 교육 및 점검 실시

① 상반기 중 관서별 집합교육 실시

② 하반기 중 교육불참사업장 및 취약업종(빌딩관리, 개인서비스업, 운수보관창고업 등 지방관서별 특정업종 선정) 집중 점검

감독관 1인당 34.44분기 각 2개소 이상

아. 『중대재해』 발생 사례 및 조치 결과의 신속한 홍보

(1) 중대재해 발생 사례의 신속한 홍보

①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전자결재방식으로 일원화
단, 시급성 등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fax 보고 (사후 전자결재방식 보고)

② 중대재해 발생 내용에 대한 집계 · 분석 자료의 활용 극대화(매분기)

-중대재해 현황 및 분석을 통한 기관별 평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분석자료 등을 언론에 공표

③ 중대재해 속보 및 사례 인터넷에 게시(교육자료 활용 등)

④ 중대재해 사례집 발간 배포(공단)

②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조치 결과 홍보

①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 제1항(구속영장 신청기준)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 집행 등 수사 동향 보고(지방)

② 송치사건 조치 결과 분석 및 언론매체 홍보(본부)

-대상 : 송치사건 중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건
-사건별 조치 결과 기록(전산입력) 유지 철저(지방)
※ 사업장 정보관리 시스템 전산관리담당자를 지정
-조치 결과를 매반기별 취합하여 인터넷에 게재(본부)

4 안전보건감독

(1) 대상

①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②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규모별 동종업종별 평균재해를 이상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 전년도 개선계획 명령 사업장

③ 기타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방관서별 감독관수 및 지역별 업종분포 등을 고려, 연간 적정한 수의 감독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

지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월별, 분기별, 수시 등) 수립 · 시행

② 결과 조치

① 감독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또는 안전보건진단명령 병행

② 산업재해 조사와 병행하여 감독을 실시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와 감독결과 범위반을 병합하여 행 · 사법 조치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중 즉시 입건대상은 【별첨 1】 법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위반시 즉시 입건대상 참조

5.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방지

(1) 건강보험부당이득금 환수자조사

지방관서는 본부에서 분기별로 일괄 파악하여 송부하는 건강보험 처리내역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 여부를 조사

사업장 정보가 없는 재해자에 대한 소재 및 사고발생 경위 파악 등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종결 처리

(2) 소방본부(119구급대)신고재해 조사

매분기 관할구역내 소방본부(119구급대)신고재해 중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재해를 감독관 1인당 3건 이상을 선정 · 조사

조사착수 후 재해자 소재파악 등이 어려울 경우 행정종결 처리

(3) 산재은폐 신고센터 및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 운영

①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감독과)에 「산재은폐신고센터」 설치 · 운영

② 「산재은폐자진신고기간(7.1~7.14)」 설정 및 동기간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사법처리 유보

(4) 행정사항

① 재해발생시기가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재해발생 미보고 재해자는 조사에서 제외

② 교통사고,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써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미보고가 집무규정상 사법처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수사에 착수

③ 산재은폐 적발실적 및 조치결과 보고, 산업재해 통계업무처리규정(예규 449호) 제5조 및 제6조

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는 노동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고는 생략

6. 지방관서별 자체 산재예방사업 추진

(1) 목적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2) 추진방법

지방관서별로 관내 업종분포,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

재해감소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수립하되 구체적인 추진일정 포함

7. 『산업재해감소협의회』 구성 · 운영

(1) 목적

지방관서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산업재해감소목표 · 대책수립 및 재해예방기관간 상호 정보교환과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협조체제 확립

(2) 구성

지방관서 관할지역내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재해예방민간단체지부(지회), 업종별 사업주단체, 전문기술단체, 근로자단체,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단체의 장

지방관서장이 협의회의 의장이 됨

(3) 운영

① 재해예방단체별 관할 안전보건관리대행 · 기술지원 사업장 전체에 대한 월별 및 누적월별 산업재해감소목표 설정 및 자체 감소대책 추진 독려

② 월별 및 누적월별 산업재해감소목표 달성실적을 매월 재해예방단체별로 평가 · 통보

③ 지방관서장은 평가결과 산업재해감소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해예방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독려 및 지도

④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IV. 건설현장 재해예방강화

1. 중소기업 건설현장 재해 집중관리

가. 영세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1) 대상 : 공사금액 2억원(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원)미만의 건설현장

② 목표 : 12,000개소

③ 지원방법 및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인·허가부서), 근로복지공단,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대상건설현장조기파악

② 8대 가시시설물 설치상태에 대한 집중 기술지도 및 교육, 기술자료 등 무로 지원 실시

- ※ 8대 가시시설물 :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비계, 안전대부착설비
- ※ 법령안내 리플렛(제목 : 소규모건설현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 게재)을 기술지원 시 배부 병행

나. 건설안전패트를 점검강화(지방)

(1) 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현장

① 매분기별 재해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관내 재해다발 공사규모 및 종류 등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취약현장

② 특별관리대상 중소기업체가 시공중인 현장

③ 지방관서장이 추락·낙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현장

- ※ 점검대상 중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영세현장은 기관평가시 가점부여
- ※ 매분기별 재해현황(지역별, 공사규모별, 발생형태별 등)은 본부에서 분석하여 노동부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관서에 제공
- ※ 특별관리대상 중소기업체는 본 세부지침 「안전관리 불량 중소기업체 시공현장 관리강화」에 의거 본부에서 선정할 명단자료를 참조

② 방법

① 감독관 1인당 월 5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2,5,6,11월을 제외한 매월 실시

분기별로 건설재해분석 결과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의 재해가 증가한 지방관서는 감독관 1인당 점검물량 확대방점

② 지방자치단체(인·허가부서),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월 1회 기준으로 건축공사 착공신고현장을 입수하는 등 점검대상 현장조기파악

③ 불시점검 및 감독관 단독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

③ 내용

①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위험요인 중심으로 안전난간 등 8대 가시시설물 설치상태 집중점검 실시

②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법령 준수여부 전반에 대하여 실시

- ※ 감독대상은 2004년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등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집중점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 ※ 법령안내 리플렛을 점검·감독시 배부 병행

다. 안전관리 취약 중소기업체 시공현장 관리강화

(1) 대상

시공능력순위 1,001~2,000대 건설업체로써 2003년도 중 재해가 다수 발생한 업체(특별관리대상 중소기업체)가 시공중인 현장

(2) 업체별 재해현황조사

공단의 산재보험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공능력순위 1,001~2,000대 건설업체의 2003년 재해현황 파악(본부, 4월)

(3) 조사결과조치

① 해당 건설업체 시공현장 특별점검(지방, 5월중)

2004년도 중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의 현장은 예방점검을 실시하되,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되는 공동도급 공사현장은 주관사들 기준으로 실시
※ 특별관리대상 중소건설업체 명단은 4월말경 확정하여 노동부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관서로 송부

②이후 패트롤점검, 취약시기 일제점검 등 점검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지방관서)

2 대형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내실화

가.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및 조치

(1) 대상 :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200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부 행정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는 업체 명단 참조

② 업체별 재해자수 조사

① 산업재해 자료 및 지방관서 보고자료 조사 : 1~4월(본부)

② 인정승인되거나 자체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 산업재해발생현황 및 전 건설현장 사망재해 발생현황 조사 : 3월(지방)

③ 업체별 공사실적액 조사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건설업체별 공사실적액 조회 : 3~4월(본부)

④ 이의신청 기회부여 · 심사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4~6월(본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현장 재해자의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 조사 병행

⑤ 조사결과 발표 : 6월말(본부)

⑥ 조사결과 조치(본부, 지방)

① 재해율에 따라 차등관리 실시

-재해율 양호업체 : 해당업체 소속 현장에 대하여 격려문을 발송하고 2004. 7. 1부터 1년간 각종 지도·감독면제
-재해율 불량업체 : 3대 취약시기 일제점검 등 각종 점검시 해당업체 소속현장을 대상 사업장으로 우선 선정

②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FQ) 시

가 · 감점(±2)토록 요청

③ 시공능력평가지 신인도 평가액 감액요청(최고 5%) 등

(7) 행정사항

① 1,000대 건설업체 소속 현장으로 인정승인되거나 자체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 산업재해발생현황 및 전 건설현장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3. 30까지 본부에 보고

② 재해율 조사결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FQ) 시 가 · 감점, 지도 · 감독면제 등 각종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후 본부에 보고

나. SC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확대

(1) 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의 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댐 등 7개 분야 SCC시설 건설현장

일반국도는 도로법 제13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도로로써 「2004년 상반기 SC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부터 대상에 포함

② 현장별 산업재해현황 조사 · 보고(지방)

관할 지방관서에서 SCC시설 건설공사 참여업체의 현장별 2004년 상 · 하반기 산업재해현황과 공사실적액을 조사 · 보고

③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차등관리(본부, 지방)

사망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율 적용

① 당해 반기에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현장은등급을한단계낮추어분류

- ② 산업재해 은폐현장은 은폐사실을 인지한 반기의 재해지수로 추가 산정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 사법처리된 경우 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분류
- ④ 황색현장 예방점검(지방,공단)
- ① 근로감독관 및 공단 직원(필요시)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 ②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범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 조치
- ⑤ 적색현장 감독(지방,공단)
- ① 지방관서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검찰,공단 직원, 재해예방민간단체 지도요원, 당해 현장의 관리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②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지방관서 안전관리자	지방관서 예방
③ 연속적색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책임전담	점검 실시
적색 관리대상인 경우 지방재해예방위탁인기업을 포함 1회 방문하여 안전관리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	본사 경고 불합격

안전진단 또는 안전관리자 중명명령(건설업 평균재해율보다 2 배이상인 현장)등 적극 추진

⑥ 행정사항

SOC시설 건설공사 참여업체의 현장별 산업재해현황 및 공사실적액을 상반기는 8.6까지, 하반기는 익년도 2.4까지 본부에 보고

3 재해위험 높은 건설현장 집중점검

- ◇ 취약시기 일제점검, 거꾸집동바리 일제점검 및 자체점검 대상으로 다음 현장을 선정할 경우 감독으로 실시
- 2004년도중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 재해를 불량 건설업체(명단 별도 송부, 발표후 1년 이내) 시공 현장
- SOC시설 적색현장(등급관리기간 내)
- ※ 위 현장을 반드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 감독을 실시한 이후 위 현장을 재차 점검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예방점검 실시 가능

가.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지방)

① 대상

- ① 재해율 우수업체를 제외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재해율 우수업체라 하더라도 2004년도에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점검대상에 포함
 ※ 위 업체 명단 중 6.30까지는 2003년 발표업체를, 7.1부터는 2004년 발표업체를 적용

② SOC시설 분류 결과 황색·적색 현장

③ 안전보건조치소홀로 인한 산업재해발생현장

④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이 있거나 은폐 신고가 있는 현장

⑤ 위험상황신고 접수현장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장을 선정하되 시기별로 다음 현장을 우선 선정

- ① 해빙기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
- ② 장마철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현장
- ③ 동절기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현장

② 방법

- ①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해빙기 점검(2.23~3.13), 장마철 점검(6.7~7.2), 동절기 점검(11.8~12.4)

- ② 취약시기별로 감독관 1인당 3개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공단 직원의 지원을 받아 점검 실시

SOC 시설 적색현장은 공단 직원 등으로 반드시 합동점검반 편성

③ 내용

- ① 취약시기별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안전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점검 실시
- ② 안전관리비 사용위반 사실 적발시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환수 또는 감액토록 조치
- ④ 관계부처 합동점검 추진
- ① 협의주관 지방관서는 다른 부처·기관 등과 점검이 겹치는 현장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책임있게 추진

관계부처·기관 및 지방관서와 점검대상·일정 등을 협의

- ② 협의기관 : 건설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국, 건설국) 산업자원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⑤ 보고기한 : 3.19(해빙기 실적), 7.9(장마철 실적), 12.10(동절기 실적)

나. 거푸집동바리 일제점검(지방)

- ① 대상
- ① 층고가 6m 이상(체육관, 상가, 공장, 극장·영화관 등 문화시설, 창고 등)인 현장
- ② 층고가 4m를 초과하는 경사슬라브(주차장 램프, 박공지붕 등)가 있는 현장
- ② 방법
10월중에 실시하되, 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
- ③ 주요 점검사항
- ①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거 조립여부, 동바리의 검정품(또는 자율등록제품) 사용여부
- ② 파이피써포트를 2단 연결 사용시 이음부 전용철판물(볼트 등) 사용여부, 수평연결재 설치여부

- ③ 램프, 계단, 박공(경사) 지붕 등 경사부에 설치하는 동바리 단부에 쉐기목 설치 등 미끄럼방지조치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협회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점검 실시

④ 점검결과 조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거푸집동바리 설치불량 또는 붕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명하고, 안전진단명령 등 적절한 조치 확행

V. 산업재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1.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가.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

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

① 대상 :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업체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업종의 고용 사업주

② 기간 : 반기 1회

③ 방법

-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되 외국인 근로자 교육용 비디오테이프·안전수첩·표어·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 활용

-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사업장을 수시 파악하여 교육대상에 포함

외국인 재해발생 사업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7개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교육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외국인 재해다발 7개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건설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금속재료제품제조업

②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① 대상 : 관내 사업장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② 시기 : 연중 수시

③방법

- 지방노동관서 실정을 고려하여 교회 등 종교단체, 외국인노동자단체등의 협조를받아 실시
- 안전수첩, 표어·포스터 등 교육·홍보자료 배부
-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례화방안강구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1)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CLEAN3D 보조사업 집중 홍보

- ①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문시 CLEAN3D 사업에 관한 지원내용 설명
- ② YIN 신문, 인터넷 홍보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우선 지원 내용 게재

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

① 대상 :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7개 업종의 고용사업장(수시)

② 점검방법

- 관서별로 자체계획 수립,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
- 당해 사업장이 다른 사업의 지도·점검대상과 중복될 경우 타지도·점검과 병행 실시
- 동종재해 재발방지조치, 5대 반복형 재해(추락, 협착, 낙하·비레, 충돌, 전도) 발생 위험요인, 근로자 정기·특별교육 실시 여부 등 중점 점검

라. 시청각 교육교재 등 개발·보급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수첩을 9개 외국어로 제작·배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화된 교육자료 등 개발·보급·협착·추락·낙하·비레·충돌·전도 등 5대 반복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용 비디오, 표어, 포스터, 스티커 중점 개발

마. 행정사항

(1) 지방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지원팀 재구성(감독관, 안전공단, 기타 관련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 하여 2004.2.28까지 본부 보고

(2)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 실시 후 보고

(3) 기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 등은 사업장 정보관리 시스템에 수시 입력

2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안전보건관리 지도·점검 강화

가. 『비정규직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실태 점검

(1) 대상 : 도급업체(용역, 협력업체, 사내하청(소사장제 포함) 중심)으로 비정규직근로자 다수사용 사업장 - 2003년도 연구용역결과 재해다발업종(중분류기준) 중 도급업체 중심으로 1회 감독관 1인당 2개소 이상 선정

협력업체 재해다발 9개 업종 : 주물·선박·강관·고무·금속·자동차·시멘트·목제품·유리제조업

(2) 시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단, 상반기는 1월 중 실시

(3) 주요 지도 점검 내용

- ① 비정규직 고용 실태
 - ②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수행 실태 평가
 - ③ 위험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 ④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등 개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여부
 - ⑤ 비정규직 근로자 정기 채용시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4) 점검결과 필요시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 (5) 행정사항
- 점검실적은 반기 익월 10일(상반기는 2.10)까지 보고

나. 기타 산업재해 취약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활

성화

(1) 근로자의 입·이직이 빈번한 업종에 대한 채용시 교육·특별교육 등 근로자 법정 안전교육 실시여부 점검(지방)

- ① 대상 : 최근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 중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
- ② 업종별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 지원 강화(공단)
- ③ 농업, 고층건물 종합관리업·항만하역업 등 지역별 취약업종에 대한 정기적인 지역특성화 교육 실시 강화(지방,공단)
- ④ 교육불참사업장은 지방관서에 통보
- ⑤ 지방관서는 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점검 실시

VI. 근원적 안전성 확보 강화

1. 불량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근절

가. 정기점검

- (1) 대상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판매·사용업체
- ① 제조·수입업체 모두 포함(안전공단 협조)
- ② 판매업체 또는 사용업체는 감독관 1인당 5개소 이하를 기준으로 다량사용업체를 우선 선정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

- ③ 점검시기 : 4월, 10월
- ④ 내용 : 법 제33조 내지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
- ⑤ 설계·완성(또는 성능)검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성능검정 미이행, 합격취소품 제조·유통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 ⑥ 특히, 수입업체, 미등록업체(법 제35조의2) 및 최근 1년간 불량품으로 인한 합격취소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1개 모델 이상(생산모델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0% 이상)을 수거하여 점검 실시(다만, 방폭전기기기기구와 같이 고가의

단품 또는 소량생산제품은 제외가능)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

- ③ 점검시 재검정제도 도입에 따른 검정주기를 준수하도록 지도
- ④ 방법 : 안전공단의 인력지원(검사, 검정분야)을 받아 실시 - 감독관 및 공단 기술인력 2인 1조로 점검반 편성, 운영

점검전에 감독관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⑤ 점검결과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하되, 미검정 또는 불합격품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주요 거래처에도 동사실을 안내

나. 수시점검(지방)

- (1) 대상
- ① 안전공단으로부터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합격취소가 있는 제조·수입업체
- ② 각종 사업 수행시, 관련 단체 또는 노·사로부터 수거검정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점검내용
- ④ 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검정·인증의 합격취소 요구가 있는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불합격품과 동일 등급 제품의 유사모델에 대해 모두 수거(집중수거)
- ⑤ 신규·단품생산·OEM생산·노동관서 또는 관련제조사협회 요청 제품(모델)에 대해서는 우선 수거
- ⑥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으로써 불량품 제보 또는 의심이 가는 제품이 있는 때에는 수시 수거
- ⑦ 각종 사업장 점검시 미검정품 또는 불합격품 사용여부 등을 확인
- ⑧ 점검 및 조치요령
- ⑨ 합격취소 사실관계 확인 → 생산량, 유통량 및 유통업체 파악 → 제조·판매중지 또는 수거 및 파

기명령 → 조치내용 확인 → 처리결과 본부 보고
(공단통보내역, 조치사항 및 이행여부 확인결과)

- ② 불량품 의심모델 : 수거 → 수거검정 의뢰(안전공단) → 조치

이미 근로자가 사용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제외

다. 행정사항

- (1) 제조 · 유통 · 사용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실적은 매반기익월 10일까지 본부(산업안전과)에 보고
- (2) 수시점검 실적은 조치사항 확인결과 즉시 본부 보고
- (3) 지방노동관서별로 점검대상사업장 현황과약유지(공단의 검사 및 검정현황자료 참조)

2 위험기계 · 기구 자체검사 철저 이행 지도

가. 자체검사 이행 지도 · 점검 강화

(1) 목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프레스 · 양중기 등의 방호장치 결함 또는 상시 기능점검 소홀 등에 의한 재해를 최소화

(2) 추진방법

- ① 관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자체검사제도 안내(본부에서 홍보물 제작배부 예정)
- ② 각종 사업장 지도 · 감독 및 재해조사시 반드시 자체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불이행시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 ③ 자체검사의 방법, 점검사항, 합격판정 등은 자체검사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실시하고 기록 유지토록 지도
- ④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자체검사대행)을 활용토록 안내

현재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은 (사)위험기계기구검사협회 및 지정검사기관 20개소가 있음.

나. 지정검사기관 지도 · 감독 철저

(1) 점검시기 : 년 2회(2월 및 8월중)

(2) 점검사항

① 지정조건 준수,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

② 특히, 관외지역 검사 결과의 부실 여부 확인 철저 (유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검주관 관서에서 검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조관서에 요청)

③ 점검요청을 받은 관서에서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현지 실사 후 그 결과를 통보(세부점검계획은 별도 시달)

(3) 점검결과 조치

시행규칙 제143조의2(행정처분기준)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점검결과를 본부 보고

3 프레스 · 리프트 다수보유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및 관리

(1) 목적

프레스 · 리프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수질절단 등 치명적인 재해를 사전에 예방

'97. 4. 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프레스 ·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안전장치 미부착 및 고장상태 방치 등으로 인한 프레스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② 점검대상 : 2003년 프레스 또는 리프트에 의해 재해가 발생되고 해당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3) 점검방법

① 지방관서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상 · 하반기에 각각 점검 실시(근로감독관 1인당

5개소기준)

- ② 특히, 프레스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안산, 대구, 부산 등 주요 지역의 관서에서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속적 특별관리
- ④ 점검시기 : 상·하반기
- ⑤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업무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그 결과를【보고서식 11】에 의거 보고

4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도·감독 철저(본부, 지방)

- (1) 대상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 68개소, 보건 : 8개소)
- ① 점검방법 및 시기 : 별도시달
- ② 추진방법
- ① 2003년도말 현재 대행기관별 대행사업장에 대한 재해율 감소실적 조사, 2003년도중 행정처분 정도 및 실태조사결과 반영
- ② 우수대행기관(전체의 10%이내)에 대한 2004년도 점검 면제 및 국고지원사업 배정 물량 인센티브 부여
- ③ 부실대행기관에 대한 제제 강화 

-시행규칙 제1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공단 국고지원사업 참여 배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 해당 대행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행기관 개입명령 등 병행조치